

연말정산 주요내용 (별책부록 수정)

2018년 12월 13일 강의

Contents

1. 인적공제
4.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7. 근로소득세액공제

인적공제

1

1-1. 기본공제

6. 공제대상여부 판정시기

소득금액 구분	소득금액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31일 이전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

7. 나이요건의 적용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 수급자	위탁아동
없음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1998.01.01 이후 출생자	1958.12.31 이전 출생자	1998.01.01 이후 또는 1958.12.31이전 출생자	-	2001.01.01 이후 출생자

8.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적용순위

소득금액 구분		소득금액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자
2인 이상이 자기의 공제대상자 로 각각 신고한 경우	배우자	배우자공제를 받는 거주자 본인
	기타 부양가족	1. 직전 연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자 2.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자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4

4-2. 자녀세액공제

1. 개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위탁아동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세액공제액

구분	세액공제액
1) 공제대상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명인 경우 : 15만원- 2명인 경우 :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 + (대상자녀수 - 2) X 30만원
2) 6세 이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3) 출산·입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1.0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3.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는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210, 2014.06.11).

소득·세액공제 적용



7-1. 공제증빙서류 명의에 따른 공제

2. 부양가족 명의를 증빙서류에 대한 공제 여부

항목	부양가족공제요건			부양가족의 범위					
	생계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배우자	직계 비속, 입양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위탁 아동	기초 수급자
기부금공제 (이월분)	○	X	○	○	○	○	○	○	○
신용카드등 사용액	○	X	○	○	○	○	X	X	X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	○	○	○	○	○	○	○
	의료비	○	X	X	○	○	○	○	○
	교육비	○	X	○	○	○	X	○	X
	기부금	○	X	○	○	○	○	○	○